



[총 무 팀] 페이지

- 마을 동향 및 행사 파악 협조 요청, 2026년 6월 정기분(제1기분) 자동차세 납부 안내 1
-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일정, 사용처, 사용기간 안내 2

[맞춤형복지팀]

- 2026년 시간·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안내, 2026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안내, 2026년도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안내 3

[개 발 팀]

-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,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, 2026년 집중 안전점검 가정용 자율점검표 배부 협조 4
- 하천·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기간 및 신고 홍보 5
-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 6
- 폭염 6대 행동 요령 홍보 7
- 풍수해·지진 재해보험 홍보 8
- 2026년 순창군 군민 안전 보험 안내 9

[환경미화팀]

- 2026년 2차 순창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신청 안내 10
- 2026년 2/4분기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협조,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1
- 2026년 노후 자동차(경유차) 조기 폐차 신청 안내 12
-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등 주민 홍보 협조,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신청 안내,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13
- 재활용품 등 각종 폐기물 분리배출 준수 홍보 14
- 생활쓰레기 등 배출 방법 주민 홍보 안내 방송문(안) 15
- 폐비닐집하장 관리 강화 준수 홍보 및 안내, 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 홍보 16
- 재활용품(우유팩, 폐건전지) 교환사업 홍보,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17

[산 업 팀]

-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
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
2026년 농작물보험 비(조사료용 포함) 품목 가입 안내 연장 알림 18
-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,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사업 신청 안내 19
-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안내
2026년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수요조사 20
-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시행 안내 21

[농업인상담소] 22

공 람	개발위원장	위 원	위 원	위 원	위 원

□ 마을 동향 및 행사 파악 협조 요청

(김성희 ☎650-5701)

○ 내 용

- 마을 내 각종 사건사고, 군정 운영에 대한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등
- 애·경사, 선진지 견학, 주요 행사(총회 등), 사건·사고 등

○ 부읍장(☎650-5701) 또는 종합행정 마을 담당직원에게 신속히 연락 협조

□ 2026년 6월 정기분(제1기분) 자동차세 납부 안내

(한규리 ☎650-5915)

○ 부과대상 : 자동차(이륜차, 기계장비 포함) / 순창읍 : 4,358건, 495백만원

○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6월 1일) 현재 순창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

※ 연세액 10만 원 이하 : 6월 한번 부과

○ 납부기간 : 2026. 6. 16.(화) ~ 7. 3.(금)

○ 납부방법 : 고지서 납부, 가상계좌 이체, 위택스 전자납부

○ 관련문의 :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(☎ 063-650-1346)

□ **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일정, 사용처, 사용기간 안내** (양정옥 ☎ 650-5708)

○ 지급일정 ※ 상황에 따라 지급일정은 1일 정도 변동될 수 있음.

구분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지급 예정일	6.29.	7.30.	8.28.	9.29.	10.29.	11.27.	12.30.

○ 사용처 세부기준

구분	읍과 면을 별개의 생활권으로 설정
읍주민 (순창읍)	- 순창군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- 다만, 읍 하나로마트 사용 불가 지역상품권 법에 따라 30억 이상 매출 가맹점 사용 불가 (축협 명품관, 물통골, 읍 하나로마트 등) - 읍면 주유소 + 읍면 편의점 + 면 하나로마트 합산 사용한도 5만원
면주민 (10개면)	- 군 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 - 5개 업종 한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(읍 15만원 가능) * 5개 업종(병원, 약국, 학원, 안경점, 영화관) - 주유소, 편의점, 면 하나로마트(농협 농자재판매점 포함) 사용한도 5만원

○ 사용기한 : **읍 주민은 3개월**, 면 주민은 6개월

<순창읍 사용기한>

- ① 3월 30일 지급분 6월 30일까지
- ② 4월 29일 지급분 7월 31일까지

<면단위 주민 사용기한>

- ① 3월 30일 지급분 9월 30일까지
- ② 4월 29일 지급분 10월 31일까지

※ 기한 내 미사용한 기본소득은 자동 반납처리, '소멸' 됩니다.

○ 잔액조회 방법

① 모바일 착(Chak) 어플 조회



② 조폐공사 콜센터 : 1670-8897

○ (연결방법) ① 기본소득 이용고객 ② 일반고객 ③ 가맹점주

⇒ 1번 누르고 상담원 연결 ⇒ 잔액조회 문의

□ 2026년 시각·청각장애인용TV 보급사업 안내 (최수정 ☎650-5912)

- 사업명: 2026년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보급 사업(저소득층)
- 신청개요
 - 신청기간: 2026. 6. 8.(월) ~ 7. 3.(금)
 - 신청대상: 보건복지부 등록 시·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·귀 상이등급자 중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,차상위)
 - 제외대상: 2020년 ~ 2025년 시·청각 장애인용 TV수령자
 - 신청방법: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((tv.kcmf.or.kr) 신청



□ 2026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안내(박성은 ☎ 650-5913)

- 내 용 : 경로당 난방비, 운영비, 간식비 정산서류 제출
- 제출서류 : 보조금 입출금통장, 지출내역서, 영수증, 결산회의록
- 제출기한 : 6. 29.(월)한

□ 2026년도 B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사업 실시 안내(오지은 ☎650-5707)

- 접종대상: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**B형간염 항체가 없는 자**
- 지원내용: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지원
- 접종비용: **7,200원**
- 접종기관: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(1층), **평일 08:30 ~ 15:00**
☎ 문의전화: 650-5240 (순창군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)

- **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**(정안성 ☎650-5703)
 - 사업량 : 3가구
 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월
 - 지원대상 : (공공임대) 이주하도록 선정된자,
(민간임대)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한 심사 통과자
 - 주요내용 : 지원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(이사비·생필품) 40만원 지원
 - 문의처 :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최기진(☎650-1771)

- **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**(정안성 ☎650-5703)
 - 사업량 : 3가구
 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월
 - 지원대상 : 신혼부부 및 청년
 - 주요내용 :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40만원 지원
 - 신청방법 : 본인이 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방문 신청
 - 문의처 :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최기진(☎650-1771)

- **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**(정안성 ☎650-5703)
 - 사업량 : 4가구
 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월
 - 지원대상 : 신혼부부 및 청년
 - 주요내용 :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최대 150만원(최대 연3%) 지원
 -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청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방문 신청
 - 문의처 :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 최기진(☎650-1771)

- **2026년 집중안전점검 가정용 자율점검표 배부 협조** (정안성 ☎650-5703)
 - 사업내용 :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과 재난 취약성 해소를 위해 가정용 자율점검표 배부 실시
 - 배부대상 : 2026. 5월말 기준 순창군 전 세대
 - 협조요청 : 각 마을별 세대수로 분배 완료, 가구별 직접 배부

□ 하천·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기간 및 신고 홍보(이은영 ☎650-5916)

하천·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기간 및 신고 홍보

하천·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!

☑ 자진 신고 기간
2026. **5. 20.(수)** ~ **6. 30.(화)**

☑ 자진 신고 대상
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
(평상, 그늘막, 방갈로, 데크, 물막이 시설, 불법경작 등)
* 일반인과 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
*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

☑ 자진 신고 시

- ☑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철거 기간 유예
- ☑ 변상금, 과태료,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, 형사책임 면책
- ☑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

☎ 신고 방법 : 관할 시·군·구청 방문 또는 유선 신고

 행정안전부

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(이은영 ☎650-5916)

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수칙



사업주는 노동자가 체감온도 31℃ 이상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온열질환 예방조치

- ✓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
- ✓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
- ✓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(선풍기 및 그늘진 장소) 설치



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의무

- 물**
 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
- 냉방장치**
 - ✓ 폭염작업 시 (이동식)에어컨,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·동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
 - ✓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
- 휴식**
 - ✓ 체감온도 31℃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
 - ✓ 체감온도 33℃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
- 보냉장구**
 - ✓ 냉각의류,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
- 119 신고**
 - ✓ 온열질환자·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
 - ✓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

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

- 체감온도 33℃ 이상**
폭염주의보
 - ✓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
- 체감온도 35℃ 이상**
폭염경보
 - ✓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- 체감온도 38℃ 이상**
폭염중대경보
 - ✓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
☐ 폭염 6대 행동요령 홍보(이은영 ☎650-5916)

폭염 6대 행동요령 홍보

행정안전부



폭염, 6대 행동요령

1   **폭염특보**

본격적인 무더위

폭염경보 35℃
폭염주의보 33℃

무더위 기상상황 확인

2  

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

3   

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

※ 실내온도 26~28℃ 유지



무더위 시 시원한 장소 휴식

5  

※

충분한 수분섭취

6  

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

☐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홍보(이은영 ☎650-5916)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홍보

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?

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
 든든한 자연재해보험이에요!

☑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보상합니다!

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, 지진해일

☑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▶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,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**보험료의 55% 이상을** 지원합니다.

▶ 정부 지원율

주택 일반 55%,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78%, 기초생활수급자, 재해취약지역 주택 87%

온실 70%

소상공인 상가·공장 55%

재해취약지역* 내 경제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등)은 정부가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* ①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금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주택
- ② 풍수해·지진재해 피해로 재산피해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 주택
- ③ 그 외 재해취약지역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가입 촉진 계획 대상 주택

※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(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상품 II)에 해당되며, 재해취약지역 여부는 관할 지자체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담당부서에 문의

연간 보험료 & 보험금 예시

※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,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보상기준 & 상품안내

구분	보험료	보험금
주택 (80㎡ 기준)	총 액	64,200
	정 부 지원	35,400
	자 부 담	28,800
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(일반)	총 액	61,800
	정 부 지원	53,900
	자 부 담	7,900

※ 동산, 침수확정특약 포함

구분	보험료	보험금
온실 (연면적 1,000㎡ 기준)	총 액	2,547,200
	정 부 지원	1,783,100
	자 부 담	764,100

구분	보험료	보험금
상가	총 액	133,500
	정 부 지원	73,500
	자 부 담	60,000
임차인 (재고자산)	총 액	89,000
	정 부 지원	49,000
	자 부 담	40,000

※ 시설·집기, 재고자산 포함

구분	보험료	보험금
소유자	총 액	140,000
	정 부 지원	77,200
	자 부 담	62,800
임차인 (재고자산)	총 액	105,000
	정 부 지원	57,900
	자 부 담	47,100

※ 시설·집기, 재고자산, 기계 포함

보장강화를 위해 특약(가재도구 등 동산, 침수보험금 확대)과 시설·집기, 재고자산, 기계 등 목적별 가입을 권장합니다.

구분	가입대상	가입방법
주택 온실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①	주택 온실	개별·단체가입
단체가입주택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①	주택	단체가입
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①	주택	개별·단체가입
실손보상·소상공인 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⑦	상가·공장	개별·공제가입

정액보상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①

주택(소유자 동산 포함)
 온실에 대한 정액보상형 상품

풍수해·지진재해보험 ①

주택(소유자 동산 포함)과 세입자 동산에 대한 정액형 상품으로 지자체가 계약자가 되어 단체계약하는 상품



*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

실손보상

주택 풍수해·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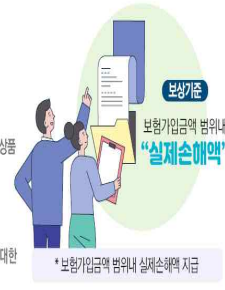
지진재해보험 ①

주택에 대한 실손 비례보상형 상품

풍수해·

지진재해보험 ⑦

소상공인 상가·공장 물건에 대한 실손보상형 상품



* 보험가입금액 범위내 실제손액 지급

2026년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안내

- 가입대상 :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(등록 외국인 포함)
- 보험기간 : 2026. 3. 1.(00:00) ~ 2027. 2. 28.(24:00) <1년>
- 보험료 : 순창군 일괄납부
- 보장대상 :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- 보험가입 세부내용 : 총24개 항목

가 입 항 목	지급대상	(최대)보장금액
1. 화재, 폭발, 붕괴 상해 사망	만 15세이상	2,500만원
2. 화재, 폭발, 붕괴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2,500만원
3.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	만 15세이상	2,500만원
4.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2,500만원
5. 강도 상해 사망	만 15세이상	2,500만원
6. 강도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2,500만원
7.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(1급~5급)	만 12세이하	2,500만원
8. 익사사고 사망	만 15세이상	700만원
9.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 사망	만 15세이상	3,000만원
10. 의사상자 지원비용	제한없음	2,000만원
11.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 사망	만 15세이상	2,500만원
12. 가스사고 상해 사망	만 15세이상	1,500만원
13.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1,500만원
14.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	만 15세이상	1,500만원
15.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1,500만원
16.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사망	만 15세이상	1,200만원
17. 뺑소니·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1,200만원
18. 강력·폭력 범죄 상해 비용 (1개월 초과 의료진단서 필요)	제한없음	500만원
19. 24시간 상해 사망	만 15세 이상	500만원
20. 24시간 상해 후유장해	제한없음	500만원
21. 화상수술비	제한없음	100만원
22. 성폭력범죄 피해	제한없음	100만원
23. 온열질환 진단비(연간 1회 한)	제한없음	10만원
24.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(1급~10급)	만 65세 이상	1,000만원

○ 보험금 청구

- 문 의 : NH농협손해보험 (☎1644-9666),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(☎650-1867)
- 청구대상 :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
- 청구방법 :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청구
- 공통서류 : 보험금청구서, 주민등록(초)본 등(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 문의)

- **2026년 2차 순창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 안내** (서해령 ☎650-5914)
- 신청기간 : 2026. 7. 7.(화) 10:00 ~ 예산 소진시까지
 - 사업량 : 40대(일반승용 32대, 택시 2대, 화물 6대)
 - 신청대상 : 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3개월(90일 이상) 순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또는 순창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단체·법인·기관
 - 신청방법
 -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(업체별 지정 판매점)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·접수하여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www.ev.or.kr)을 통해 관련서류 접수
 - 선정기준 : 차량 출고·등록 순(보조금 지원가능 확인 요청서 등록 순)
 - 보급차종 :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한 차종
 - ※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(www.ev.or.kr) 참조
 - 지원금액 :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
(단위 : 만원)

구분	승용		화물	
	일반	초소형	일반	초소형
(최대)지원금액	1,189	485	2,417	584

- 추가보조금
 - 전기택시 : 250만원 추가 지원
 - 택배용 : 택배용 차량 대체 구매 시 10% 추가 지원
 - 차상위 이하 계층 : 국비지원액의 20~30% 추가 지원
 - 소상공인 :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 - 청년 생애 최초 : 국비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 - 초소형 전기승용·화물차 : 50만원 추가 지원
 - 다자녀 :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50만원 추가 지원(차종별 차등 지원)
 - 농업인 :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
□ 2026년 2/4분기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공급 협조(서해령 ☎650-5914)

- 지급대상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및 마을이장
- 지급수량 : 20L 규격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봉투
 - 1인세대 : 9장
 - 2인이상 세대 : 18장
 - 마을이장 : 9장
- 협조사항 : 봉투 배부 및 수령인 확인 서명

□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(서해령 ☎650-5914)

- 사업대상 :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(창고, 축사 등) 건축물
- 지원기준(건축물 대장 기준 동당 지원)
 - 지붕 철거 ㄱ 주택 : 최대 7백만원(우선지원가구는 전액지원)
 ㄴ 비주택 : 면적 200㎡이하 지원(면적초과시 초과되는
 사업비의 50% 지원, 최대 1천만원 한도)
 - 주택 지붕개량 : 일반 5백만원 이하, 우선지원가구 1천만원 이하
- ※ 우선지원가구 :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·독거노인·장애인가구 등
- ※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- 접수기간 : 2026년 2월 ~ 6월까지
- 신청방법 : 건축물 소재지 읍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제출서류
 -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 - 위치도 및 사진 현황(현 건물 전경 사진) 1부.
 -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건축물 관리대장 등) 1부.
 - ※ 건축물대장 미등재시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소유권 확인 자료
- 지원방법
 - 군에서 직접 선정된 위탁업체에서 사업 추진
 - ※ 개인이 먼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후 보조금 지원 신청 불가

□ **2026년 노후자동차(경유차) 조기폐차 신청 안내**(서해령 ☎650-5914)

- 신청기간 : 2026. 4. 17.(금) ~ 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량 : 138대(5등급 88대, 4등급 46대, 건설기계 4대/변동될 수 있음)
- ※ 5등급 자동차(경유 이외의 연료포함)는 2026년 이후 폐차 보조금 지원 종료
- 지원대상 : 배출가스 4·5등급 경유자동차, 2009. 8. 31.이전 배출허용 기준 제작된 도로용 5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, 굴착기, 지게차)
 - 등록기간 : 신청접수일 기준 순창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
 - 관능검사 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차량(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)
 - 차량상태 : 자동차 성능·점검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, 도로용 건설기계
 - 기타 :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, 저공해 엔진 미개조 차량
- ※ 지방세 등(환경개선부담금 포함) 체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제한
-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상한액 (1차+2차)	지원율			
		1차(폐차)	2차(차량구매)		
5등급 자동차	① 총중량 3.5톤 미만	300	100%	-	
	② 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440	100%	200%(신차) 100%(중고차)
	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750		
	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1,100		
		7,500cc 초과	3,000		
③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	4,000				
4등급 경유차	① 총중량 3.5톤 미만	800	70%	30% (전기·수소·하이브리드)	
	② 총중량 3.5톤 이상	3,500cc 이하	720	100%	200%(신차) 100%(중고차)
		3,500cc 초과 5,500cc 이하	1,600		
		5,500cc 초과 7,500cc 이하	2,400		
		7,500cc 초과	7,800		
③ 덤프트럭,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트럭	10,000				

구 분	총중량	상한액 (1차+2차)	지원율	
			1차(폐차)	2차(차량구매)
굴착기	① 16톤 미만	1,650	100%	200%(신차)
	② 16톤 이상 33톤 미만	2,700		
	③ 33톤 이상	7,900		
지게차	① 9톤 미만	1,050	100%	200%(신차)
	② 9톤 이상 18톤 미만	3,400		
	③ 18톤 이상	12,000		

- 신청방법 : 인터넷(mecar.or.kr) 또는 방문제출(순창읍행정복지센터)
- 신청서류 : 신청서, 등록증, 신분증(또는 사업자등록증), 우선순위 증빙서류(해당자)

□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등 주민홍보 협조 (서해령 ☎650-5914)

- 배출시간 : 수거 전일 저녁 6시 ~ 익일 아침 6시까지
(일요일은 배출 금지)
- 배출장소 : 지정된 장소 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용수거함
- 배출방법 : 생활쓰레기 배출 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
- ※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부과

□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서비스 신청 안내 (서해령 ☎650-5914)

- 신청방법 : 인터넷/모바일(www.15990903.or.kr), 전화(☎1599-0903)
- 대상품목
 - 대형가전 :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, 태양광패널, 일반전자제품
 - 세트품목 : 오디오 세트, 데스크탑(본체+모니터)
 - 소형가전 : 상기 품목 외 5개 이상 중소형 가전제품

□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(서해령 ☎650-5914)

- 신고방법 : 읍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팀 전화신고(☎650-5914)
- 신고대상
 - 가스오븐렌지, 장농, 소파, 책상, 식탁, 피아노, 스피커, 난로, 오락기, 밥상, 책꽂이, 의자, 싱크대, 침대류, 장식장, 문갑, 화장대, 옷걸이, 신발장, 쌀통, 벽시계, 액자, 가방, 캐비닛, 인형류, 장난감류, 진열대 등
 - 상기 품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함
 - ※ 대형폐기물 : 폐기물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배출 품목별 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거하는 폐기물
- 협조사항 : 대형폐기물 배출시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팀에 사전신고 후 배출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협조

재활용품 등 각종 폐기물 분리배출 준수 홍보(서해령 ☎650-5914)

○ 항목별 배출 안내

구 분	재활용 선별 가능 품목		반입상태	재 활용 안 되는 품목 (종량제봉투 배출)
재 활용 품	종이	신문지, 책, 박스류	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종류별 묶어서 배출	코팅종이, 이물질이 섞인 종이, 벽지, 화장지 등
	종이팩	우유팩, 주스팩, 종이컵	물로 헹구 펼쳐 말린 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※ 종이팩과 종이컵 따로 배출	
	유리병	음료수병, 술병 등	이물질 제거 후 내용물 비우고 배출(깨지지 않게)	유리, 사기그릇, 거울, 페타일, 도자기, 화분병 등
	캔류(고철 등)	철캔, 알루미늄캔, 부탄가스통	이물질 제거 후 내용물 비우고 배출	페인트, 폐유, 오일 등 유해 물질이 묻었거나 담았던 통
	플라스틱	재활용마크 있는 것(음료수, 생수병 등 불투명 용기)	뚜껑이나 라벨상표를 제거하고 내용물 비우고 배출	삼푸 등 펌프식 용기, 고무대야, 완규류, 알약 포장재
	투명페트병	생수병, 음료수병 등 투명 용기	색이 없는 투명한 페트병, 내용물 비우고 라벨상표를 제거 후 배출	
	스티로폼	과일상자, 농수산물 상자 등	내용물과 이물질, 부착상표,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	이물질이 묻은 것, 색상있는 것
	비닐류	재활용마크 있는 것(비닐)	이물질 제거 후 물로 헹군 후 배출	이물질 묻은 것
	<p>● 재활용품 수거일(매주 목요일), 배출시간(매주 수요일 18:00 ~ 익일 06:00까지)</p>			
음식물 쓰레기	<p>● 배출방법 : 수분 제거 후 전용용기에 칩을 꽂아 집 앞 배출(수거 후 전용용기 가정 회수) - 전용용기 안 비닐봉지 등 이물질 반드시 제거</p>			

○ 협조사항 : 생활속 재활용 가능 자원 **분리배출 주민홍보 방송 실시** 협조

※ 붙임 :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주민홍보 방송문(안) 참조

생활쓰레기 등 배출 방법 주민홍보 안내 방송문(안)

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○○마을 이장 입니다.

주민여러분께 생활쓰레기 등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.

각 가정 및 상가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.

생활쓰레기 배출시 꼭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캔류, 병류,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을 배출할 경우 품목별로 분류한 후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재활용품 수거일인 매주 목요일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읍사무소 환경미화팀(063-650-5914)으로 사전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, 불법 쓰레기 배출 및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은 ○○마을 주민여러분께 생활쓰레기 등 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렸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폐비닐집하장 관리 강화 준수 홍보 및 안내 (서해령 ☎650-5914)

품목	종류 예시	배출방법
폐비닐	로덴비닐, 하이덴비닐, 하우스비닐	흙을 털어낸 후 종류별로 분리 해서 집하장에 배출
폐농약병 (플라스틱)	살균제, 살충제, 제초제(유리병×), 생조제 등	농약을 다 쓴 후 폐농약용기 수거함 또는 포대, 그물망 등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
폐농약봉지 (봉지류)	살균제, 살충제, 제초제, 생조제 등	농약을 다 쓴 후 폐농약용기 수거함 또는 포대, 그물망 등에 담아 집하장에 배출
영양제병	영양제, 촉진제 등 영양제병	폐농약병과 섞이지 않게 따로 분류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또는 매립장으로 반입
기타 영농폐기물	비료포대, 폐부직포, 폐차광막, 반사필름, 점적호스등	각 마을 수집 → 읍면사무소 폐기물 배출확인증 발급 → 매립장으로 반입 (톤당 10만원) → 위탁처리

※ 폐비닐과 영농폐기물 혼합되어 선별 정리 필요시 크레인 집게차 지원

영농부산물 등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 홍보 (서해령 ☎650-5914)

- 대 상 : 영농부산물(벼, 보리, 고추, 과수 잔가지 등) 및 생활폐기물
-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적발 시 처분내용
 - 기본형 공익직불제 10% 감액 지급,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
 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협조사항 : 쓰레기,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홍보 협조

재활용품(우유팩, 폐건전지) 교환사업 홍보(서해령 ☎650-5914)

- 사업기간 : 연중
- 우유팩 ↔ 화장지 교환

품 목	용 량(ml)	수집량(매)	교환 보상 내용
종이팩 (우유팩)	200	50	화장지 1개
	500	25	
	1,000	15	

※ 우유팩은 내용물 세척 후 펴서 건조하여 교환 신청 요망

- 폐건전지 ↔ 새건전지 교환

품 목	종 류	수집량(개)	교환 보상 내용
폐건전지	망간·알카라인, 리튬1차, 니켈카드뮴, 니켈수소, 산화은	10	새건전지 1개

- 협조사항 : 재활용품(우유팩, 폐건전지) 교환사업 주민홍보 협조

1회용품 없는 날 운영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(서해령 ☎650-5914)

-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: 매월 10일
 - 10일 : 1(회용품), 0(無, Zero)
- 개인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실천 방법
 - 비닐봉지 사용량 줄이기,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
 - 플라스틱 빨대, 면봉, 이쑤시개, 식기 및 일회용 컵, 면도기 사용하지 않기
 - 카페에 텀블러 들고 다니기
 - 테이크 아웃이나 배달하지 않고 직접 가서 먹기
 - 물티슈 사용하지 않고 행주와 걸레 사용하기
 - 과대포장, 선물포장 하지 않기
- 협조사항 :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및 개인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참여 주민홍보 협조

□ **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** (박준완 ☎650-5923)

- 신청기간: '26. 7. 2.(화)까지
- 사업내용: (후계농)산업기능요원 선발에 따른 산업체 34개월(현역) 또는 23개월(사회복무) 의무복무
- 신청대상(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)
 -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었거나 2027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
 - 기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
 - 대학(대학원) 등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이 아닌 자
- 신청방법: 순창읍 산업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과 함께 제출
 ※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탭에서 신청서 다운 가능

□ **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** (박준완 ☎ 650-5923)

- 신청기간: '26. 6. 30.(화)까지
- 사업내용
 - 농업창업(세대당 3억 한도): 영농기반, 제조, 가공시설 신축·수리·구입 등
 - 주택구입(세대당 7,500만원 한도): 주택구입, 신축, 리모델링 등
- 지원형태: (융자 100%)연 2%,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
- 신청대상: ① 귀농인, ② 재촌 비농업인, ③ 귀농희망자
 - 기본요건: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만 65세 이하,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
 - 자격요건(귀농인):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순창군 전입 6년 이내인 자
- 신청방법: 인구정책과 귀농귀촌팀 방문 신청(풍산면 금풍로 1013)

□ **2026년 농작물보험 비(조사료용 포함) 품목 가입기간 연장 알림**
(박준완 ☎ 650-5923)

대상품목	가입기간		비고
	변경 전	변경 후	
비(조사료용 포함)	4. 20. ~ 6. 19.	4. 20. ~ <u>6. 26.</u>	이양 지연으로 인한 지자체 등의 연장 건의 일부 반영

□ 202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(황정희 ☎ 650-5922)

- 신청기간: 26. 6. 15.(월) ~ 26. 12. 31.(목)까지
- 신청장소: 거주지 관할 읍·면사무소 산업팀
- 신청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, 영유아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장, 다자녀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
- 유의사항: 기존 신청자는 자동 신청됨.
※ 전입·전출, 세대원 가구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자동중지되므로 재신청 필요

□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사업 신청 안내 (황정희 ☎ 650-5922)

- 신청기간: 26. 8. 10(월)까지
- 신청사업: 스마트팜 ICT시설보급, 원예시설현대화, 에너지절감시설, 신재생에너지시설
- 제출서류: 신청서, 사업계획서 및 정보동의서, 견적서
- 지원내용
 - 스마트팜 ICT시설보급사업: ICT장비(온도·습도조절 센서, 영상·제어장비 등)
 - 원예시설현대화: 측고인상, 관수·관비(양액시설 등), 환경관리(차광, 자동개폐기 등)
 - 에너지절감시설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
 - 신재생에너지시설: 지열·지중열, 폐열, 공기열, 목재펠릿 냉난방시설

□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안내

(황정희 ☎ 650-5922)

- 신청기간: 26. 6. 19.(금) ~ 6. 25.(목)
- 사업기간: 26. 7. 중순 ~ 12. 중순 (5개월)
-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(dajeong37@naver.com), 1개의 파일로 제출
 ※ 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☎063-711-2089
- 지원대상
 - 「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을기업
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
- 사업내용
 -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
 - 취업형 또는 일자리창조형 선택하여 신청(최대 4명까지 신청가능)

□ 2026년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수요조사 (정윤주 ☎ 650-5706)

- 신청기간 : 26. 6. 30.(화)까지
- 사업개요 : 국지적 강수부족으로 논 물마름, 밭작물 시듦 등이 발생한 지역에 관정·뚝방, 양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가뭄 피해 방지 및 최소화
- 조사서식

위치					재배면적(ha)			공급면적(ha)			사업내용							사업내용 (구체적으로 작성)	농어촌용수 공급 부족 현황			
시도	시군	읍면	동리	번지	계	논	밭	계	논	밭	관정	양수장	준설	저수조 (물탱크)		저류지 (뚝방)	송수관로 km			기타		
														개소	개소						개소	개소
				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	
					8.0	8.0	-	8.0	8.0	-	1	-	-	-	-	-	-	1.5	-	-	증형관정 1공, 송수관로 1.5km	
				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	
				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-		

□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시행 안내 (황정희 ☎ 650-5922)

- 「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(국토교통부·환경부 공동부령) 제정안과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이 공포·시행('25.4.28) 되었습니다.
- 내 용: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분야의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분야를 통합운영
- 검사종류 및 대상

검사종류	정의	대상	검사기관
사용검사	•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	• 사용폐지신고 한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용신고를 하려는 260cc 이상 대형이륜자동차	검사대행자(공단)
정기검사	•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	•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(대형, '18년 이후 중·소형)과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대형 이륜차	검사대행자(공단) 지정정비사업자 <u>*필요시 출장검사 시행예정(공단)</u>
튜닝검사	•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	• 이륜차 규칙 시행일 이후에 튜닝승인을 받아 튜닝하는 이륜자동차	검사대행자(공단)
임시검사	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	• 이륜차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이륜자동차	검사대행자(공단)

○ 수검 수수료

(단위 : 원, 부가세 포함)

구 분	수수료	비 고
정기검사	30,000	* 민간검사소와 다를 수 있음
사용검사 (260cc이상 대형)	50,000	
임시검사	30,000	
튜닝검사	24,000	
튜닝 재검사	20,000	
표기	차대번호	70,000
	원동기형식	70,000

○ 과태료 부과기준

- 정기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: 2만원
- 2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(최대 20만원)

○ 문 의 처: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☎650-1328

□ 벼 재배관리

- 중간물떼기 : 이앙 후 30~40일 경(포기 수 16~18개 확보 후 실시)
 - 실금이 생길 정도로 말려주기, 모래땅은 7일 이내로 권장
 - 중간물떼기 실시 2~3일 후 미량요소 복합비료 시비
- 과비답 도복경감제 사용 및 조기 이앙벼 이삭거름 사용
 - ※ 도복경감제 사용시기 : 중간낙수 3~5일전

□ 고추 재배관리

- 2차 추비시용 : 1차 추비시용 후 20~30일경
 - 건조, 장마시에는 석회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칼슘제 살포(초기착과시 효과 좋음)
- 진딧물, 총채벌레, 담배나방, 탄저병 등 종합방제
 - 담배나방은 고추 꽃 뒤쪽에 알을 낳고 고추 열매속에 들어가 생활, 이후 낙과 발생 → 가급적 알까지 죽일 수 있는 침투성 약제를 선택하여 방제 권장
- 토양 건조 시 칼슘결핍 증상 다발생
 - 비 예보가 없을 시 칼슘 흡수 중단이 없도록 7일 간격으로 관수
 - 결핍 증상 발생 시 주 1회 간격 최소 2~3회 칼슘제 엽면시비
- 집중호우 대비 탄저병 방제 요령
 - 집중호우 전 : 보호성 살균제(작용기작 '카' 위주 살포)
 - 장마이후(소강상태) : 침투이행성 살균제(작용기작 '다' 또는 '사')

□ 올바른 전착제 사용법

- 전착제 종류 : 습전성(식물표면 균일부착), 고착성(작물표면에 왁스층 형성-장마기 좋음), 침투성(약제 침투력 향상)
- 전착제 사용시 주의사항
 - 약제가 마르도록 비오기전 2-3시간전 살포
 - 비가 올때는 고착성 전착제 선택
 - ※ 농약 성분중 계면활성제 80%이상 약제, 스트로빌루빈계 전착제 혼용시 약해 우려, 전착제 과다 및 중복 살포시 약해 우려(고온기 주의)